

독일의 다이어트식품에 관한 규율

- 비만조절을 위한 식품을 중심으로 -

李 鍾 永*

차 례

- I. 들어가는 말
- II. 개념규정
 - 1. 규정상의 징표
 - 2. 다이어트식품으로 특정된 식품
- III. 표시와 광고
 - 1. 다이어트표시
 - 2. 광고의 제한
 - 3. 표시제한과 광고제한의 합헌성
- IV. 다이어트식품에 허용되는 첨가물
 - 1. 일 반
 - 2. 기술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
 - 3. 당 분
- V. 비만체중조절을 위한 다이어트식품과 일일섭취량
 - 1. 규정목적
 - 2. 기본요건
- VI. 맺는 말

* 韓國法制研究院 先任研究員, 法學博士

I. 들어가는 말

지난 10여년전부터 우리의 식생활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전통적인 탄수화물위주의 우리의 식생활은 서구식의 식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과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육류를 주된 영양성분으로 하는 식생활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 한국사람들의 체형이 비만화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것이었다. 칼로리가 많은 지방과 단백질 위주의 식생활과 생활의 편의기구의 증대로 인한 현대인의 활동량감소는 상호 상승적으로 신체의 비만의 원인이 되고 있다. 급기야는 비만의 정도가 지나쳐서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금 여러가지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소비자를 유혹하고 있는 각종 다이어트식품의 범람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비만체중을 조절하기를 희망한다는 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비만체중조절을 위한 다이어트식품의 과대광고와 허위광고를 필두로 하는 다이어트식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범람하는 비만체중조절을 위한 다이어트식품은 단순히 허위광고나 과대광고에 의하여 소비자를 위협하는 경제법적인 차원을 넘어서, 국민의 건강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보건법적인 차원에서 정책적인 고찰을 하게 하고 있다.

다이어트식품은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만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에 한정되지 않는다. 다이어트식품은 특수한 영양관리를 필요로 하는 식품으로서 모유를 먹지 못하는 신생아를 위한 육아용식품, 이유식, 당뇨병환자를 위한 특수영양식 그리고 나트륨에 민감한 반응을 하는 사람을 위한 특수영양식 등을 포함하는 식품이다.¹⁾ 즉, 다이어트식품은 특별한 영양보충의 필요성이 특정된 상황에서 필요하거나 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의하여 소비되는 식품이다. 그러므로 다이어트식품을 응용하는 사람은 사용목적에 합치하는 효과가 다이어트식품에 의하여 보전된다는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독일의 「다이어트식품명령」에 규정된 비만체중조절을 위한 식사대용식품으로서 다이어트식품에 관하여 고찰한다. 독일의 비만체중조절을 위

1) 이종영, “유럽연합의 다이어트식품에 관한 준칙”, 「법제연구」 통권제10호(1996), 한국법제연구원, 117면이하(119면) 참조.

한 식사대용식품은 「다이어트식품명령」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 외의 일반적인 식품으로서의 일반적인 사항은 독일의 식품법과 그 외의 식품과 관련된 법규에 의하여 규율을 받는다. 그러므로 이 글은 비만체중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다이어트식품에 관한 특별규정을 중심으로 고찰한다.

II. 개념규정

다이어트식품은 특정된 영양소 혹은 영양생리적으로 작용하는 다른 성분의 음용을 강화하거나 감소하거나 또는 이러한 성분이 다른 성분과 특정된 결합관계나 특정된 특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특별한 영양공급에 기여하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이어트식품은 배합이나 특성에서 비교되는 다른 종류의 식품과 현저하게 구별된다. 독일의 현행 「다이어트식품에관한명령」(이하 「다이어트식품명령」) 제1조는 유럽연합의 「다이어트식품준칙」²⁾에 합치하여 다이어트식품을 “特別한 營養”을 위하여 규정된 식품이라고 개념규정하고 있다.³⁾ 그러나 이러한 개념규정은 다이어트식품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이고, 비만체중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다이어트식품은 “음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거나 또는 사용방식에 일치하여 음용될 있는 식품이 전체 식사나 또는 몇 끼니의 식사 대체용으로 전체영양에 공급목적으로 제공되는 식품이다”.

2) 유럽연합의 「다이어트식품규율」에 관한 진행과정과 전망에 관하여는 이종영, 전계논문, 117면이하 참조; 다이어트식품의 개념에 관한 독일법의 규정은 최소한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다이어트”개념을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는가에 관련없이 유럽연합시장 내에서도 적용된다. 그러므로 최소한 이 범위에서는 유럽연합회원국간에 합의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1993년까지 독일의 「다이어트식품명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다이어트식품은 특정된 영양소 혹은 영양생리적으로 작용하는 다른 성분의 음용을 강화하거나 감소하거나 또는 이러한 성분이 다른 성분과 특정된 결합관계나 특정된 특성에 영향을 줌으로써 특별한 영양공급에 기여하는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이어트식품은 그 배합 혹은 특성으로 비교되는 다른 식품과 현저하게 구별되어야 한다(제1조제1항). 다이어트식품이 기여하는 “特別한 營養”은 질병, 영양결핍, 신체기능이상 그리고 개별식품 또는 식품의 특정된 구성성분에 대하여 과민성반응 등의 이유에서(제1조1제2항제1호) 또는 임신기간동안, 수유기간동안 그리고 유아나 이유식기에 있는 아기 등(제2호)에 합당한 영양공급을 말한다.

1. 규정상의 징표

(1) 약품과 구별

다이어트식품도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법상의 식품개념에 합치하여야 한다. 즉 다이어트식품이 약품이어서는 안된다. 다이어트식품과 약품의 법적인 구별에는 식품과 약품의 구별에 관한 일반적 원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비록 질병치유에 도움이 되는 영양공급을 목적으로 다이어트식품이 사용되어도 다이어트식품은 약품은 아니다.⁴⁾ 그러므로 특별한 의료목적의 식품도 약품이 아니다. 구매자의 구매의사는 다이어트식품과 약품을 구별하는 징표로서 중요하지 않다. 즉 다이어트식품으로 표시된 제품을 구매자가 약용의 의도로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품이지 약품이 아니다.⁵⁾

제품의 모양은 다이어트식품과 약품의 구별에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영양 성분과 작용성분을 농축된 형태로 만들어진 특정된 다이어트식품(소위 압축된 영양성분)은 그 종류와 목적에 따라서 특별히 적은 단위로 생산되어 음용된다. 그러므로 제품의 외형(캡슐형, 가루형, 고체형)에서 약품의 특성을 찾아서는 안된다.

독일의 법원도 캡슐속에 달맞이꽃씨유와 생선유를 함유한 제품은 여러 배의 불포화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더라도 약품이 아니라 다이어트식품이라고 판시하였다.⁶⁾ 독일의 다른 법원은 오메가-3-지방산을 함유하고 있는 농축연어유를 다이어트식품으로 판시하고, 콜레스테롤, 혈액순화 그리고 고혈압에 좋다고 하는 광고는 질병과 관련되기 때문에 금지하였다.⁷⁾ 독일 연방보건성은 생선유의 효능은 학문적으로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행정법원⁸⁾은 성분배합, 구성부분, 형태, 포장 그리고 판매장소들을 고려하여 농축연어유를 약품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일섭취량의 5배이상을 함유하고 있는 비타민 E는 식품으로서의 특성을 넘어선다고 하고 있다.

4) 이종영, 「식품위생법의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7면이하; W.Zipfel/K.-D.Rathke, *Lebensmittelrecht*, Bd.II, C20, Rdnr.11a.

5) 이종영, 「식품위생법의 개선방안」, 27면 ; W.Zipfel/K.-D.Rathke, *a.a.O.*, §1 LMGB, Rdnr.41., C 100.

6) LG Hamburg, *LRE* 20, 295.

7) LG Köln, *WRP* 1988, 481.

8) BVerwG Berlin, *VG* 14A 217.86.

(2) 특별한 영양

「다이어트식품명령」 제1조제2항에 규정된 “특별한 영양”은 일상적인 생존에 필요한 영양소섭취를 충족하는 일반적 음용과 대립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영양성분 혹은 영양생리적으로 작용하는 다른 영양성분의 섭취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감소시키는 것이 특별한 영양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 또는 이러한 성분의 섭취가 다른 성분과 특별한 결합관계나 특정된 상태에서 특별한 영양목적에 기여할 수도 있다. 이러한 내용은 개정전의 독일 다이어트식품명령에는 개념징표로서 명백하게 규정되었으나, 현행 「다이어트식품명령」에는 “특별한 영양”외의 개념징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징표는 보충적으로 완용될 수 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과 같은 에너지공급원 뿐만 아니라,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과 같은 생존에 필요한 모든 성분도 영양소로 표현된다.¹⁰⁾ 영양생리적으로 작용하는 성분은 스스로는 영양성분이 아니면서 특별한 영양목적에 기여하는 성분이다. 섬유질이 여기에 속하는 성분의 예가 된다. 섬유질은 음식물로서 섭취되나, 인간의 소화효소에 의하여 분해되지 않고, 인간의 대장속의 박테리아에 의하여 분해되어 적은 일부는 흡수되어 박테리아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한다. 섬유질성분은 다이어트분야에도 중요할 수 있는 영양생리적인 작용을 한다.

(3) 비만체중

다이어트식품의 중요한 개념징표인 특별한 신체적 상황에 비만도 속한다. 비만은 몸안의 지방량이 정상치를 초월하여 과체중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비만증은 체중에 대한 지방분의 비율이 남자는 20%, 여자는 30%이상 초과하는 것이다. 신체내 지방량의 확대는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첫째는 이미 존재하는 지방세포에 지방을 채워서 세포를 확대하는 것으로, 지방세포의 비대라고 한다. 둘째는 체내 지방세포의 전체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지방세포

9) 독일의 「다이어트식품명령」은 1978년에 제정되었고(BR-Drs.234/77), 1981년에 1차 개정되었으며(BR-Drs.642/80), 1988년에 현재의 규정(BR-Drs.41/88)이 정착되었다.

10) 각각의 성분과 영양에 관하여는 고무석외 다수, 「식품과 영양」, 효일문화사, 1996, 17면이하 참조.

의 증식이라고 한다.¹¹⁾ 비만은 고혈압, 혈중 콜레스테롤의 상승, 당뇨병, 대장암, 직장암, 전립선암, 담낭암, 당도암, 유방암, 자궁암 및 난소암의 발생빈도를 높인다.¹²⁾ 「다이어트식품규율」에서는 비만의 예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만이라는 존재하는 상황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비만의 원인¹³⁾ 등은 다이어트식품의 규율에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비만이라는 사실적인 상황이다. 지방과다증은 「약국에서판매되는약품과자유판매되는약품에관한명령(Verordnung über apothekenpflichtige und freiverkäufliche Arzneimittel)」¹⁴⁾에서 신진대사장애와 분비장애병으로 규정되어 있다. 심한 비만은 지방과다증이 된다.

(4) 다이어트특성의 표시

특별한 영양에 관한 특성이 명백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표시는 의무적이며, 개념적으로 중요하다. 특별한 영양에 대한 표시없이는 다이어트식품이 아니다. 다이어트식품은 제품에 질병의 예방, 치료 또는 치유에 관한 특성이 표시되거나 또는 기재되어서는 않된다. 이러한 표시의 금지는 독일 식품법 제1조제1항제1호에 근거하고 유럽연합 「표시준칙」 제2조제1항제b호와 유럽연합 「다이어트준칙」 제6조제1항과 일치한다.

(5) 일반음용식품과 구별

모든 다이어트식품은 배합과 생산과정의 특수성에서 일반 음용식품과 명백하게 구별된다.¹⁵⁾ 명백한 구별은 또한 배합과 생산과정의 특수성과 관련된

11) 고무석외 다수, 전게서, 225면 참조.

12) 비만의 건강에 대한 부정적 기능에 관하여는 고무석외 다수, 전게서, 226면.

13) 비만은 그 유형에 따라 2가지로 분류되고 있다. 하나는 뇌질화에 따른 시상하부 영역의 장애나 호르몬 분비 이상에 의해 생기는 증후성 비만이고, 다른 하나는 병적 증상을 동반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단순성 비만이다. 단순성 비만의 원인으로서는 유전, 생활환경, 운동부족, 식사형태, 에너지 소비기구의 차이, 정신적, 사회적 요인들이 거론된다. 자세한 것은 고무석외 다수, 전게서, 226면이하.

14) 식품법과 관련된 법규명령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는 Rechtsausschuß und Geschäftsführung des Bundes für Lebensmittelrecht und Lebensmittelkunde e.V., *Leitfaden für lebensmittelrechtliche Praxis*, 2.Aufl., S.19ff.

15) 유럽연합의 「다이어트준칙」도 특별한 영양식품과 일반음용식품의 배합과 생산과정의 특수성에서 구별하고 있다.

다이어트의 효능에 있어야 한다. 일반 음용식품과 구별을 하는 데에 반드시 비교가능한 종류의 식품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구별의 어려움은 다이어트분야외에서 저지방, 저열량 식품의 음용시에 있다. 예를들면 설탕대신 당원(Süßstoff)으로 생산될 수 있는 레모네이드 음료수는 일반적 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음료수이다. 그러므로 레모네이드 음료수가 주로 다이어트식품에 사용하는 당원을 추가하였다는 것으로 다이어트식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에는 일반음용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과의 명백한 구별이 없다. 일반 음용목적의 식품에 당원의 추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당원의 사용으로 다이어트식품이 될 수 있다. 특정된 성분추가에 따라서 다이어트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별하는 데에는 위와 같은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일반 음용식품과 다이어트식품을 구별하는 척도를 다른 데에서 찾으려는 노력이 있다.

특별한 영양목적에 적합한 식품인가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표시하여 시장에서 판매되는가에 따라서 다이어트식품을 일반식품과 구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식품의 특정된 영양목적에 고려한 특정된 성분의 량도 다이어트식품과 일반식품을 구별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 예를들면 신진대사순환질환을 겪고 있는 유아에게는 특정된 성분의 적은 양도 과민반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성분을 아주 적게 함유하는 식품이 다이어트식품이 될 수 있다.

(6) 예방제과 사용통제

특별한 영양의 필요성은 특별한 생리적 상태에 있는 소비자 집단에만 합치하면 된다. 즉 독일의 다이어트식품명령에서 의미하는 “特別한 營養”은 다이어트식품이 특별한 생리적 상태의 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물론 특별한 생리적 상태예방은 의학적인 이유도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이어트식품은 질병의 예방목적으로도 섭취될 수 있다.

특별한 생리적 상태의 존재만이 다이어트식품의 섭취를 만족시키지는 못한다. 특별한 생리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영양분을 함유한 특정된 성분을 조절하여 섭취함으로써 현재의 특별한 생리적 상태에 유용하게 이용한다. 문제가 되는 성분은 질적인 면에서 또는 양적인 면에서 각각의 상태에 따라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각각의 생리적인 상태가 다이어트식품의 섭취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다이어트식품은 특정된 성분에 대한 조절이 중요한 의

미를 가지기 때문에 다이어트식품의 사용방법과 사용량 등이 제품의 포장지나 내부용지에 기재되어야 한다.

2. 다이어트식품으로 특정된 식품

독일 「다이어트식품명령」 제1조제3항은 ①식염대용품(Kochsalzersatz) ②설탕대체재료로서 과당, 마니트 그리고 크리스톨 ③당분으로서 사카린과 시클리멘트(시클로헥실술과민산과 나트륨이나 칼슘의 결합체) 등을 다이어트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식품은 제1조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다이어트식품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다이어트식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항에 열거된 성분은 식품이 특별한 다이어트의 특성을 추가시키는 데에 기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성분들은 다이어트식품의 첨가물이라고 할 수 있다.¹⁶⁾ 그러나 이러한 성분의 첨가로 일반식품이 자동적으로 다이어트식품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생산품의 전체적 특성이다.

과당, 마니트 그리고 크리스톨이 설탕의 대체재료로서 사용되는 경우에만, 다이어트식품이다. 아이스크림의 생산에 사용되는 소르비트가 기술적인 이유로 사용되면, 이는 다이어트식품이 아니다. 설탕대체재료는 당뇨병자를 위한 식품에 사용된다. 소르비트, 마니트 그리고 크리스톨은 명백하게 첨가물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식품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다. 과당은 어느 정도의 일일섭취량까지는 당뇨병환자의 탄수화물 신진대사에 부담을 주지 않는 탄수화물에 속한다. 과당은 일반식품에도 첨가된다. 그러므로 과당의 첨가로 일반식품이 다이어트식품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Ⅲ. 표시와 광고

독일의 「영양가표시에관한명령(Nährwert-Kennzeichnungsverordnung)」 제7조제1항제1문에 의하면 식품이 신체를 날씬하게 하는(schlankmachende), 신체의 날씬함을 촉진하는(schlankheitsfördernde) 또는 체중을 줄이는(gewichtsverringendernde)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암시하는 표시, 항목 또는 포장에 식품의 유통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문에는

16) 첨가물에 관하여는 이종영, 「식품위생법 개선방안」, 33면이하 참조.

식품의 표시, 항목 또는 포장에 대한 예외적인 식품으로 다이어트식품을 규정하고 있다. 즉 일일할당량으로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 「다이어트식품명령」 제14a조의 의미에서 식품에는 「영양가표시에관한명령」 제7조제1항제1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1. 다이어트표시

다이어트목적으로 시장에 판매되는 식품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식품의 목적과 일치하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독일 식품법 제5조제5호도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식품의 성분, 열량 등은 다이어트목적과 관련되기 때문에 명백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이외에 특정된 식품의 특성이나 생리적 효능에 관한 기재는 다이어트의 목적과 관련이 되지 않아도 허용되어야 한다.

일반식품에서는 “다이어트”라는 단어를 단독으로나 또는 ‘다이어트성 식품’, ‘다이어트로 사용할 수 있는’, ‘다이어트에 유용한’ 등과 같은 다이어트와 결합된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그외에 모든 표시, 성분표시 그리고 포장지에 다이어트식품의 인상을 줄 수 있는 글이나 그림 또는 표시를 할 수 없다. 특히 ‘다이어트’라는 단어외에 영양과 관련된 특별한 특성, 특별한 영양목적 또는 영양과 관련된 특별한 특성을 포함하는 생산과정과 관련된 표시등도 사용이 금지된다. 이러한 규정은 독일의 「식품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의한 일반적인 오도금지의 구체화라고 할 수 있다.¹⁷⁾

비만체중의 조절을 위한 다이어트식품에 대하여는 다이어트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지방질과 탄수화물의 감소가 아주 적은 열량을 가진 물이나 다른 대체성분과의 교환으로 될 수 있다. 이 경우에 단순히 “지방감소” 또는 “칼로리감소”와 같은 일반적 항목은 분석치와 결합된 경우에도 충분하지 않다. 영양성분변경의 표시는 종류와 양에 따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에 다이어트식품의 명칭은 “체중조절을 위한 대체식품”이어야 한다.

「다이어트식품명령」 제14a조제2항에는 비만체중조절을 위한 다이어트식품의 표시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의하면 비만체중조절을 위한 다이어트식품은 성분의 종류와 양에 따라 영양성분변경의 종류와 영양성분을 감소한 성분구성분이 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간의 음용시에는 의사의 상

17) P.Lips, *Wegweiser durch das Lebensmittlrecht*, 4.Aufl., 69ff.

답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는 경고표시가 있어야 한다(제14a조제2항제2호).

결국 「다이어트식품명령」 제14a조의 의미에서 식품은 날씬하게 하는, 신체의 날씬함을 촉진하는, 체중감소적 특징을 암시하는 표시를 하여 유통시킬 수 있다. 이 때에 다이어트식품의 명칭은 “체중조절용 위한 대체식품”이어야 한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된 다이어트식품은 포장되어서만 유통될 수 있다. 그러나 다이어트식품이 즉석에서 음용될 목적으로 제공되는 한에서 포장될 필요성은 없다.

2. 광고의 제한

다이어트식품에는 원칙적으로 질병과 관련된 항목을 기재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질병과 관련된 항목의 기재금지 는 독일 「식품법」 제18조제1항제1호와 제7호와 관련된다. 질병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광고는 병의 내역, 질병과 관련되는 의사의 의견개진, 질병과 관련된 의사가 아닌 자의 의견개진, 의료분야나 질병의 처방을 하는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이나 의사의 그림 등을 첨부한 광고이다. 질병과 관련된 광고의 금지는 소비자가 식품의 건강효능에 관하여 사안적으로 적합한 지식없이 표시된 단어나 문구로 쉽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특히 소비자의 착오를 방지하는 데에 기여한다. 그러나 절대적인 광고의 금지는 비례원칙¹⁸⁾에 반한다.¹⁹⁾

다이어트식품은 다른 일반식품과는 달리 체중감소의 광고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일일영양섭취로 사용되는 다이어트식품에 대하여는 예외가 허용된다. 일일영양섭취로 사용되는 다이어트식품은 하루에 필요한 영양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을 의미한다. 일일영양섭취는 식사 대신 다이어트식품만의 음용시에 열량주입이 실제적으로 기초대사(Grundumsatz) 이하이기 때문에 칼로리를 표준화한 배합에 근거하여 과체중에 대한 영양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일섭취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을 다이어트식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열량에 정향된 식사계획 내에서 하루 동안의 에너지섭취를 통제하는 경우에만 체중감소의 표시는 타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식품보다 단순히 열량이 감소된 식품이라고 다이어트식품은 아니며, 다이어트식품이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18) 비례의 원칙에 관한 자세한 것은, 황치연, 「헌법재판의 심사척도로서의 과잉금지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참조.

19) P.Lips, *a.a.O.*, S.76ff.

시 하루동안에 음용되는 전체의 열량을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하루동안에 섭취되는 음식의 일부로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은 다이어트식품이 될 수 없다. 소위 표준화된 일일섭취량 그 자체만이 체중감소광고에 대한 금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3. 표시제한과 광고제한의 합헌성

경제질서적 또는 경제유도적 성질을 가진 조치는 입법권자에게 행위재량과 판단여지가 부여되어 있다.²⁰⁾ 이러한 의미에서 「영양가표시에관한명령」 제7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헌법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이 규정은 독일 「식품법」 제19조제4호에 법률적인 위임근거를 가지고 있고, 직업행사에 대한 규율로서 헌법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²¹⁾ 그리고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암시”라는 용어도 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충분한 확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²⁾

IV. 다이어트식품에 허용되는 첨가물

1. 일 반

독일의 「다이어트식품명령」 제7조는 영양생리적 목적이나 다이어트목적에 기여하는 첨가물의 허가를 포함하고 있다.²³⁾ 동명령 제7조제1항은 유아나 이 유식아기를 위한 다이어트식품의 첨가물과 그외의 다이어트식품첨가물을 구별 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이어트목적으로만 투여되는 첨가물은 식품이 다이어트 특성을 가지게 할 수 있다. 기술적인 목적이나 영양생리적 목적으로 허용되는 첨가물에서는 식품의 다이어트특성이 전제된다.²⁴⁾ 사용목적이 특별히 지정된

20) BVerfGE 46, 246(257).

21) BVerfGE 46, 120(145).

22) BVerfGE 38, 348(371); 47, 109(120f.)

23) 색소나 방부제와 같은 첨가물은 식품에서 첨가물로 취급되어 식품의 기본원리인 금지의 원칙에 의하여 지배된다 : 자세한 것은 이종영, 『식품위생법의 개선방안』, 33면 이하 : S.Ringel, Das deutsche und gemeinschaftliche Lebensmittelrecht als Sicherheitsrecht-Lebensmittelrechtliche Aspekte innerhalb der Europäischen Union, DuncHen und Humblot, 1996, S.48ff.

24) BGH LRE 5, 257, 265, 266.

첨가물은 그 지정된 사용목적에만 사용이 허용된다. 최대 첨가량이 규정된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최소치가 규정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비만체중의 조절을 위한 다이어트식품의 첨가물은 독일 「다이어트식품명령」 목록 A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미네랄성분과 미량원소, 비타민성분 등이다. 물론 이러한 첨가물이 일반음식과 구별하는 결정적인 척도는 아니다.

2. 기술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첨가물

「다이어트식품명령」 제6조는 다이어트목적이 아니라, 기술적 목적으로 사용이 허용되는 첨가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목적의 첨가물은 다이어트식품의 제조과정에 사용되는 기계와 식품의 분리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분리물과 운반성분 등이다. 여기서도 색소와 방부제는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된다. 그리고 특정된 첨가물은 일반식품에서는 허용되나 다이어트식품에는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되는 첨가물도 표시를 하여야 한다. 허가된 사용목적과 각각에 허가되는 최대치는 다이어트식품명령 별첨에 규정되어 있다.

「다이어트식품명령」 제6조제1항에는 기술적 목적으로 사용이 허용되는 다이어트식품의 첨가물을 열거하고 있다 : ①「독일의 첨가물명령(Zusatzstoff-Zulassungsverordnung)」 제2조에 의하여 사용이 허용된 첨가물, ②육고기와 육고기제품, 우유와 치즈를 포함한 유제품, 카카오 그리고 카카오제품, 독일의 「과일잼에관한명령(Konfitürenverordnung)」에서 의미하는 제품과 아이스크림에 사용이 허용된 첨가물, ③맛에 영향을 미치는 향성분으로서 「향에관한명령(Aromenverordnung)」의 [첨부 5] 제2호에 규정된 성분, ④향분리제와 운반성분으로서 「향에관한명령」의 [첨부 5] 제3호에 열거된 성분 ⑤[첨부 1] 목록 A에 열거된 성분. 이러한 성분들은 특정된 사용목적으로만 그 사용이 허용된다. 허용되는 사용량은 각각의 명령에 규정된 최대치를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다이어트식품 [첨부 1] 목록 A에 열거된 성분은 소르빈산과 소르비트, 이산화유황, 색소, 질산칼륨, 소르비트칼륨, 펙틴, 글리세린, 6 Palmitoyl- L-아스코르빈산 등이다.

3. 당 분

설탕의 대체물이 필요한 상황에서 당분인 사카린(Saccharin)과 시클라민

(Cyclamat)은 다이어트식품의 당분으로 사용된다. 당분은 모든 다이어트식품에 첨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탕의 대체물을 필요로 하는 식품에 사용이 허용된다. 특별한 영양목적이 충족되는 한에서 부분적인 대체로도 충분하다. 설탕의 대체물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식품은 설탕을 넣지 않아야 다이어트식품으로서 특성을 가지는 식품이다. 비만체중의 조절을 위한 다이어트식품에서 설탕의 열량 때문에 설탕의 대체물이 요청되고, 건강을 위협하는 정도의 비만한 사람에게 저칼로리나 칼로리가 축소된 다이어트제품에 설탕의 대체물이 필요하다. 또한 다른 질병과 비만이 겹친 사람에게 감축된 열량이나 부담을 주는 탄수화물의 감소가 필요한 경우에 설탕의 대체물로서 당분이 사용된다.²⁵⁾

위와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이어트식품은 전체열량이 현저하게 적어서 지정된 열량을 초과하지 않음으로서 다른 식품과 명백하게 구별된다. 그러므로 저칼로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다이어트식품명령」 제8조제2항에 의하면 음료와 식품에 1리트에 시클라민은 0.8그램, 사카린은 0.2그램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V. 비만체중조절을 위한 다이어트식품과 일일섭취량

비만체중의 조절을 위한 식품은 식사대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독일의 다이어트식품명령에 관한 규율을 받으며, 이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식사대체용으로 사용되는 비만체중조절을 위한 다이어트식품은 1978년 7월 1일의 「영양가표시에 관한명령(Verordnung über Nährwertangaben bei Lebensmitteln)」 제10조로 인하여 도입되었다.

1. 규정목적

식사대체용으로 응용되는 다이어트식품은 다이어트의 관점이외에 영양실조의 방지를 위하여 식품성분의 배합과 표시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고, 소비자에게 장기적인 복용시에 의사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는 주의사항이 표시될 필요성이 있다. 음식에 의한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이어트식품명령」 제1조제4항제5호와 제14a조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독일연방보건성과 독일연구공동체의 공통된 의견에 의하면 칼로리를 줄인 식사의 생리적 열량은

25) W.Zipfel/K.-D.Rathke, *a.a.O.*, § 14a Rdnr.14ff.

최대한 400kcal로 제한된다. 그리고 일일 에너지량은 1200kcal를 넘어서는 안된다.

식사대용품으로 음용되는 다이어트식품이 「다이어트식품명령」에서 의미하는 비만체중조절을 위한 다이어트식품이다. 「다이어트식품명령」에서 의미하는 비만은 사소한 과체중이 아닌 한 특별한 생리적 상태이다. 일반적으로 비만은 체중에 대한 지방분의 비율이 남자는 20%, 여자는 30% 이상 초과할 경우를 말한다. 신체내 지방량은 2가지 형태로 늘어난다 : 첫째는 이미 존재하는 지방세포에 지방을 채워서 세포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지방세포의 비대(hypertrophy)라고 한다. 둘째는 체내 지방세포의 전체적 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지방세포의 증식(hyperplasia)²⁶⁾이라고 한다.²⁷⁾ 다이어트식품으로서 비만체중을 조절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로 성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에게 비만은 섭취하는 칼로리가 방출되는 에너지량보다 많은 결과 남은 카로리가 체중의 지방세포를 비대하게 한다. 그러므로 다이어트식품은 칼로리섭취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어떠한 식품이 다이어트식품으로 분류되는가에 관한 척도는 생리적 열량, 단백질, 지방산 그리고 탄수화물의 양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성분과 같은 영양소량 등이다.²⁸⁾

식사대용으로 사용되도록 확정된 식품이 적은 열량이나 축소된 열량을 가진 식품이라고 하여 「다이어트식품명령」 제14a조의 규정에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적은 열량과 열량을 감소한 식품이 다이어트식품이 되기 위하여는 비만체중자에 특별한 식품이어야 한다. 즉 높은 혈당량, 고혈압, 심장병 등의 고통을 받는 환자에 대한 치료라는 추가적 조치가 있는 식품이 비로소 다이어트식품으로 된다. 전체적으로는 지방감축, 대체지방, 저핵산, 저나트륨과 같은 다른 다이어트적 조치가 징표로 나타나 있어야 한다. 「영양가표시에관한명령(Nährwert-Kennzeichnungs-Verordnung)」 제7조제3항제1문의 의미에서 식품에는 「다이어트식품명령」에서 규정된 철분결합물이 첨가물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6) 비만으로 증가한 지방세포수는 치료로 감소되지 않고 세포의 크기만 작게된다. 따라서 소아기에 비만이 된 사람의 치료는 매우 어려우며 성인이 된 이후의 비만은 치료 이후 단순히 비대세포가 정상으로 된다는 점에서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고무석외 다수, 전게서, 225면).

27) 고무석외 다수, 전게서, 225면.

28) Kübler, *Ernährungslehre und Diätetik*, Band 1 Teil 2, S.589.

2. 기본요건

(1) 일반내용

「다이어트식품명령」 제14a조제1항에 의하면 다이어트식품이 되기 위하여는 위에서 언급한 이외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①생리적 열량이 음용준비된 식품의 100그램당 420kjoul 또는 100kcal 그리고 매식사당 1675kjoul 또는 400kcal, 일일섭취량 5025kjoul 또는 1200kcal를 넘지 않아야 한다.²⁹⁾
- ②단백질함유량이 매식사당 25그램, 일일섭취량에 50그램 이하여서는 안된다 ; 단백질부분은 주로 질 좋은 동물성 단백질이나 또는 생물적으로 등가적인 단백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③기본적 지방산은 매식사당 3그램, 리놀산을 포함하여 일일섭취량이 7그램 이하여서는 안된다.
- ④탄수화물은 매식사당 20그램, 일일섭취량 90그램 이하여서는 안되며, 이 중에서 최대한 받은 유당(Laktose)이어야 한다
- ⑤아래의 비타민과 미네랄성분은 다음의 양 이하여서는 안된다 :

성 분	매 식 사	일 일 섭 취 량
비타민 A(레틴롤)	0.3mg	0.9mg
비타민 B ₁	0.5mg	1.6mg
비타민 B ₂	0.7mg	2.0mg
비타민 B ₆	0.6mg	1.8mg
비타민 C	25mg	75mg
비타민 D	0.8µg	2.5µg
비타민 E(α-토코페롤) 또는 α-토코페롤-대등성분)	4mg	12mg
칼슘	300mg	800mg
철분	6mg	18mg

29) Alinorm 91/26. [첨부Ⅲ]에 의하면 매일 식사의 대체용으로 제공되는 다이어트 식품은 800Kcal(3350Kjoul) 이하여서는 안되며 1200Kcal(5020Kjoul)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음용목적으로 권고되는 1회 섭취에너지는 일일간 식품전체 에너지의 약 3분의 1 또는 4분의 1이어야 한다. 한끼 식사의 대체용으로 제공되는 다이어트식품은 200Kcal(835Kjoul) 이하여서는 안되고 400Kcal(1670Kjoul)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다이어트식품이 식사대용으로 제공되는 때에는 전체에너지 흡수량이 1200Kcal(5020Kjoul)을 초과할 수 없다.

다이어트식품에 요구되는 이러한 요건은 식품의 생산시점 및 유통시점과 관련이 있다. 즉 다이어트식품이 되기 위한 이러한 요건은 생산시점과 유통시점에 충족되면 되고, 이러한 음식을 구매한 소비자가 음용하는 시점에 반드시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다이어트식품명령」 제26조제1항제1호e). 그러나 생산시에 규정된 열량과 영양이 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즉 다이어트식품의 생산자는 제품을 생산할 당시에 준수된 기준이 소비자가 구매할 당시까지 유지되도록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가능한 최대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비타민과 미네랄성분에도 적용된다.

(2) 특별내용

생리적 열량은 영양성분의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의 에너지가 영양성분의 분해시에 체내에서 발생하는가로 표시되어야 한다. 생리적 열량은 식품의 에너지함량을 표시한다. 이는 kjoule 또는 kcal로 표시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이다. 표시되는 열량은 평균적 영양성분함량에서 나오는 평균적 생리열량이다. 열량표시에 1%미만의 열량을 가지는 성분도 열량에 포함되어야 한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공급하는 영양성분이다.³⁰⁾ 단백질은 동물과 식물에서 섭취하고 소화흡수하여 체성분으로 재합성되는 인간의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식품성분이다.³¹⁾ 단백질은 종류가 많고, 식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단백질은 그 조성이 서로 다르다. 단백질은 가수분해하면 주로 알파-아미노산이 생기지만 어떤 종류의 단백질은 아미노산이외에 탄수화물(당류), 인산, 색소, 핵산 등이 생기는 것도 있다. 필수아미노산이 단백질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생물에 대한 유용치는 더욱더 높다. 동물성 단백질은 생선, 우유, 젖, 그리고 달걀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식물성 단백질은 특히 콩에 포함된 단백질이 좋다. 이러한 이유에서 단백질함량에 관한 최소치가 규정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단백질은 주로 질이 좋은 동물성 단백질이나 또는 생물적으로 동등한 단백질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에 의하여 질좋은 단백질이 충분하게 배려될 수 있다. 물론 특정된 식물성 단백질의 배합으로서 질적으로 높은 프로테인이

30) 이에 반하여 Alinorm 91/26[첨부 III]에 의하면 음용되는 식품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의 최소한 25%와 최대한 50%가 단백질에 의하여 공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체 단백질량은 매일 125g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

31) 남궁석/소명환, 「식품학총론」, 150면 참조.

배합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만체중자에 대한 영양이 순수한 채식으로도 보장될 수 있다.³²⁾ 그러나 특정된 단백질의 종류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최소한의 단백질함량을 배려하지 않게 되면, 비만체중자의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다.

필수지방산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는 지방산으로 신체의 성장과 유지 및 여러 생리적 과정의 정상적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이들을 필요로 하는 동물에 의해 체내에서 생합성되지 않거나 불충분한 양이 합성되는 지방산을 의미한다.³³⁾ 리놀레산(linoleic acid), 리놀렌산(linolenic acid) 그리고 아라키돈산(arachidonic acid)이 필수지방산에 속한다. 필수지방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양실조의 현상이 나타난다.

탄수화물은 광합성 작용에 의하여 식물세포에서 만들어진 글루코오스(포도당)가 변환되거나 중합되어 이루어진 분자량이 수십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다양한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³⁴⁾ 탄수화물은 주로 식물에 포함되어 있고, 동물은 식물이 합성하여 축적한 탄수화물을 주영양소로 섭취한다. 과잉섭취하면 지방으로 동물의 체내에 저장되기도 한다.

비타민은 신체의 성장과 유지, 신진대사의 자율성 및 정상적 기능 수행에 요구되는 소량의 유기화합물로서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식이로부터 반드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이다. 비타민은 신체의 구성을 에너지를 공급하는 성분이 아니라, 신체의 신진대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생물적 정화장치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타민은 본질적으로 다른 영양분과 구분된다. 효소나 호르몬과 같은 작용성분과 달리 비타민은 인간의 기관에 의하여 합성되지 않는다. 인체내에서는 정상적인 생명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생체 구성물질의 합성 및 분해반응이 일어난다. 인체내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화학반응은 생체촉매인 효소에 의하여 촉진된다. 효소는 모두 단백질인데, 일부 효소들은 단백질이외에 다른 유기화합물 또는 금속이온을 필요로 한다. 이때 다른 유기화합물에 해당하는 것을 조효소라 하며, 모든 비타민 B복합체와

32) BR-Drs. 234/1/77.

33) 필수지방산의 섭취를 위하여 대략 총에너지 섭취의 2-4%의 지방질 섭취가 요구되며, 지용성 비타민의 공급을 위하여 대략 총에너지 섭취량의 10%의 지방질 섭취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하루 적절한 지방질 섭취량은 총에너지 섭취의 20%를 권장하고 있으나 15%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고무석외 다수, 전게서, 21면).

34) 윤광로/이영춘/정동효, 「현대인의 식품」, 27면.

비타민 C 및 비타민 K가 조효소의 전구체이다. 이들 효소들은 에너지 대사, 합성 등 많은 반응에 관여하므로 필요한 양의 비타민이 공급되지 않으면 인체 내의 모든 세포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 비타민 B복합체는 당질, 지방질 및 단백질의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많은 조효소들의 조효소가 되므로 이들의 부족은 에너지의 생성을 저해하고 각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킨다. 이외에 비타민의 부족은 각기병, 빈혈, 피부염, 설사, 치매증, 괴혈병, 치근염의 원인이 되며, 혈액응고가 되지 않게 된다.

비타민 A의 부족은 야맹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상피세포 각질화와 안구 건조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비타민 C는 수용성 황산화제로, 비타민 E는 지용성 항산화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비타민 D는 인체내에서 변화되어 호르몬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변화된 비타민 D는 소장세포에 작용하여 칼슘을 흡수하는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하므로 칼슘의 흡수율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성장시기에 비타민의 결핍은 구류병을 유발하며 성인의 경우는 골다공증 또는 골연화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³⁵⁾

무기질(미네랄성분) 중에서 칼슘과 철분만 최소한의 양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무기질은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이며, 신체내에서 유기물질을 완전히 연소시킨 후에도 남아있는 생물체 회분의 구성성분이다. 즉 무기질은 탄소를 함유하고 있지 않은 금속이온 및 비금속이온이다. 무기질에는 다이어트식품의 규율대상인 칼슘과 철분외에 금속이온으로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이 있고, 비금속이온으로 염소와 인이 있다. 미량무기질에는 금속이온으로 철, 아연, 크롬, 구리, 셀레늄, 망간, 모리브덴이 있고, 비금속이온으로 요오드, 불소가 있다.

무기질은 뼈와 치아를 구성하는 성분이며, 체내에서 부족하면, 성장부진과 구류병, 골다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무기질은 세포의 외핵과 내핵 상호간의 수분평형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무기질은 이외에 신체내에서 산-알카리의 평형을 유지하며, 생리적 작용에 대한 촉매작용을 하며, 신경세포와 근육세포의 흥분에 관여하며, 호르몬의 구성성분이 되거나 치아의 작용을 돕는다. 그러므로 무기질이 체내에 부족하게 되면 위와 같은 무기질의 작용에 이상이 발생하여 신체기능에 이상현상을 발생시킨다. 특히 다이어트식품에 최소

35) 고무석외 다수, 전게서, 30면; 윤광로/이영춘/정동효, 전게서, 52면 참조.

한의 양을 규정하고 있는 칼슘은 우유와 유제품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뼈와 치아의 구성에 필요하다.

(3) 예외규정

「다이어트식품명령」 제14a조제3항은 위에서 규정된 비만체중조절을 위한 다이어트식품에 대한 규정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예외가 되는 비만체중조절을 위한 다이어트식품은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제조되고 종합병원이나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에서 의사의 통제하에서 교부된 다이어트식품이다. 이러한 다이어트식품은 비록 그 성분의 배합이 다이어트식품명령에서 규정된 사항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의학적인 증상에 근거하여 제조된 경우에는 「다이어트식품명령」 제14a조제1항과 제2항의 규율을 받지 않는다. 즉 3가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비만체중조절을 위한 다이어트식품의 규율을 받지 않는다. 첫째는 의사의 처방에 의한 생산, 둘째는 지속적인 의사의 통제하에서 종합병원이나 또는 이와 비교될 수 있는 시설물 내에서 교부되어야 하고, 셋째는 성분 배합이 의학적인 증상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한다.

VI. 맺는 말

다이어트식품은 사실 식품과 약품의 중간영역에 속하는 음용품이라고 할 수 있으나, 약품보다는 식품에 보다 가깝기 때문에 독일의 입법권자는 식품법의 규율을 받게 하고 있다. 다이어트식품이 일종의 식품이기 때문에 「다이어트식품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식품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여러 가지의 식품관련명령이 적용된다. 다이어트식품을 특별한 규율대상으로 하는 주된 목적은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보호에도 있다. 전자는 주로 다이어트식품의 표시와 광고에 대한 규제로 이를 실현하고, 후자는 다이어트식품의 특성에 따른 구체적 요건을 충족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요건으로는 일일섭취되는 비만체중조절을 위한 다이어트식품의 최대열량과 매 끼니당 필요로 하는 최대한의 열량을 규율하고 있다. 비만체중조절을 위한 다이어트식품은 흡수되는 열량의 제한으로만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독일의 다이어트식품명령에서는 100그램당 420kjoul 또는 100kcal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매 끼니당 1675

kJoul 또는 400kcal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하루섭취량은 5025kloul 또는 1200kcal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비만체중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자의 섭취열량 감소로 인하여 비만을 방지하는 데에 기여한다.

비만체중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다이어트식품의 또다른 규율목적은 식사대용으로 다이어트식품이 섭취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최소한 필요한 영양성분을 섭취하게 하는 데에 있다. 즉 소비자가 식사대용으로 판매되는 다이어트식품을 섭취하더라도 인체의 이상현상을 방지하게 하는 최소한의 영양소는 섭취하게 하고 있다. 즉 비타민 A, B₁, B₂, B₆, C, D, E, 칼슘, 철분 등과 같은 성분에 대하여는 독일 「다이어트식품명령」이 양에 대하여 일정한 규율을 하고 있다. 이러한 규율에 의하여 비만체중조절을 목적으로 다이어트식품을 섭취하는 소비자의 건강은 보장될 수 있다.